

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 제2항중 “부지사” 를 “행정부지사” 로 “제12호” 를 “제7호” 로 한다.

제3조중 “제7호 및 제8호” 를 “제4호내지 제5호” 로 하고 “제10호” 를 “제6호” 로 하며 “제12호내지 제21호” 를 “제7호내지 제16호” 로 한다.

제3조 관련 제7호(종전 제12호) “별표” 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